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37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2021년 4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고등학교 1개교 교명 변경

2. 주요내용

- 고등학교 명칭 (안 별표 3)

변경: 1개교

○ 용산공업고등학교

- 명칭 변경: 용산공업고등학교 → 용산철도고등학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5]

- 1)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별첨 2])

다. 협 의: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2) 입법예고(2020. 12. 29. ~ 2021. 1. 18.) 결과: 의견 없음
- 3) 교육규제심사: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별첨 3]
- 6)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명칭란 중 “용산공업고등학교”를 “용산철도고등학교”로 한다.

구 분	지역교육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중부	용산구	용산철도고등학교	용산구 서빙고로 24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고등학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3] 고등학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 분	지역 교육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구 분	지역 교육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중부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	용산구 서빙고로 24	본청	중부	용산구	용산철도고등학교	용산구 서빙고로 24

【별첨 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기관 명칭변경으로 인한 현판 등 교체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판 등의 교체 비용이 발생하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김혜림(02-6973-9585)

【별첨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1A서울교육001			
정책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담당자명	김혜림	전화번호	02-6973-9858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박정희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1년 01월 06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1년 01월 13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01월 13일

【별첨 4】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 일부개정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성 명 : 김혜림 직 급 : 주무관 연락처 : 02-6973-9858
평가담당	학생인권교육센터	옹호관 김영준	
해당조항	검토결과		검토결과
[별표1] [별표2] [별표7]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1.4.1.자 서울특별시립 고등학교 교명 변경을 하기 위한 개정으로,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조항에 대해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단권고
해당조항	참고의견		
	해당 없음		

※ 본 검토의견서를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

【별첨 5】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생략)

[전문개정 2007. 12. 2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4.] [법률 제1668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략)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 17. (생략)